

아너스 웰가 진주 입주자 모집 공고



※ 단지 주요정보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
|-------|---------------------------------------------------|----------------------------------------------|----------------|----------------|----------------|-----------------------------------|-----------------------------------|
| 민영 | 경상남도 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5.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진주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
| 없음 | 없음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일정 | 24.05.31.(금요일) | 24.06.10.(월요일) | 24.06.11.(화요일) | 24.06.12.(수요일) | 24.06.18.(화요일) | 24.06.19.(수요일)~ 24.06.30.(일요일) | 24.07.01.(월요일)~ 24.07.04.(목요일) |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및 상담전화(☎055-757-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 시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및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일반공급 |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홀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

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onorswellga.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의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
|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 | X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31.(금요일)**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임)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진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5.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4.06.10.(월요일) | 24.06.11.(화요일) | 24.06.12.(수요일) | 24.06.18.(화요일) | 24.06.19.(수요일)~ 24.06.30.(일요일) | 24.07.01.(월요일)~ 24.07.04.(목요일) |
| 방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06-2 - 문의 : 055-757-1004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상남도 진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없음 | 없음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이에 최초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아래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부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등기 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 초과 |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납부기한 및 방법

※ **분양(전매) 계약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12.06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 의무적용

※ 2023.01.01.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 주택형 표기 방식은 기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 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4.03.2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23176호(2024.5.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7~39층 4개동 총 840세대 [특별공급 313세대(기관추천 55세대, 다자녀가구 84세대, 신혼부부 100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 생애최초 5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2024000237 | 01 | 084.8916A | 84A | 84.8916 | 36.5135 | 121.4051 | 71.9511 | 193.3562 | 21.8454 | 278 | 27 | 28 | 50 | 8 | 25 | 138 | 140 | 8 |
| | 02 | 084.8132B | 84B | 84.8132 | 36.6038 | 121.4170 | 71.8846 | 193.3016 | 21.8252 | 280 | 28 | 28 | 50 | 8 | 25 | 139 | 141 | 8 |
| | 03 | 096.9081 | 96 | 96.9081 | 43.1927 | 140.1008 | 82.1360 | 222.2368 | 24.9376 | 68 | - | 7 | - | 2 | - | 9 | 59 | 2 |
| | 04 | 115.2551 | 115 | 115.2551 | 49.5782 | 164.8333 | 97.6863 | 262.5196 | 29.6589 | 214 | - | 21 | - | 6 | - | 27 | 187 | 6 |
| 합 계 | | | | | | | | | | 840 | 55 | 84 | 100 | 24 | 50 | 313 | 527 | 24 |

- 주거 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 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 규모 표시 방법을 중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 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 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기타 공용 면적은 기타 공용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인허가 변경, 지적확정 측량 및 공부정리 결과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구 분 (약 식 표 기) | | 84A | 84B | 96 | 115 | 합 계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8 | 8 | - | - | 16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3 | 3 | - | - | 6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4 | 4 | - | - | 8 | |
| | 장애인 | 경상남도 | 3 | 4 | - | - | 7 |
| | | 부산광역시 | 2 | 2 | - | - | 4 |
| | | 울산광역시 | 2 | 2 | - | - | 4 |
| 중소기업 근로자 | 5 | 5 | - | - | 10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28 | 28 | 7 | 21 | 84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50 | 50 | - | - | 100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8 | 8 | 2 | 6 | 24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25 | 25 | - | - | 50 | |
| 합 계 | | 138 | 139 | 9 | 27 | 313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점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점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단위 : 원)

| 약식 표기 | 동·라인 구분 | 층구분 | 세대수 | 분양가 |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입주자정일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계약 시 | 2차 계약 후 30일 이내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 |
| | | | | | | | | | | 2024-11-29 | 2025-11-28 | 2026-08-31 | 2027-04-30 | 2027-07-30 | 2027-10-29 | | |
| 84A | 101동 1호 103동 1호 103동 6호 104동 6호 | 2~5층 | 14 | 106,860,721 | 420,139,279 | - | 527,000,000 | 10,000,000 | 4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158,100,000 |
| | | 6~10층 | 20 | 108,280,124 | 425,719,876 | - | 534,000,000 | 10,000,000 | 43,400,000 | 53,400,000 | 53,400,000 | 53,400,000 | 53,400,000 | 53,400,000 | 53,400,000 | 53,400,000 | 160,200,000 |
| | | 11~15층 | 20 | 109,699,526 | 431,300,474 | - | 541,000,000 | 10,000,000 | 4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162,300,000 |
| | | 16~20층 | 16 | 110,713,385 | 435,286,615 | - | 546,000,000 | 10,000,000 | 4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163,800,000 |
| | | 21~25층 | 20 | 111,727,244 | 439,272,756 | - | 551,000,000 | 10,000,000 | 4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165,300,000 |
| | | 26~30층 | 20 | 112,741,102 | 443,258,898 | - | 556,000,000 | 10,000,000 | 4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166,800,000 |
| | | 31~35층 | 20 | 113,754,961 | 447,245,039 | - | 561,000,000 | 10,000,000 | 4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168,300,000 |
| | | 36~최고층 | 12 | 114,768,820 | 451,231,180 | - | 566,000,000 | 10,000,000 | 4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169,800,000 |
| | 101동 6호 102동 1호 102동 6호 104동 1호 | 3~5층 | 8 | 104,833,004 | 412,166,996 | - | 517,000,000 | 10,000,000 | 4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155,100,000 |
| | | 6~10층 | 20 | 106,252,406 | 417,747,594 | - | 524,000,000 | 10,000,000 | 4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157,200,000 |
| | | 11~15층 | 20 | 107,671,808 | 423,328,192 | - | 531,000,000 | 10,000,000 | 4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159,300,000 |
| | | 16~20층 | 16 | 108,685,667 | 427,314,333 | - | 536,000,000 | 10,000,000 | 4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160,800,000 |
| | | 21~25층 | 20 | 109,699,526 | 431,300,474 | - | 541,000,000 | 10,000,000 | 4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162,300,000 |
| | | 26~30층 | 20 | 110,713,385 | 435,286,615 | - | 546,000,000 | 10,000,000 | 4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163,800,000 |
| | | 31~35층 | 20 | 111,727,244 | 439,272,756 | - | 551,000,000 | 10,000,000 | 4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165,300,000 |
| | | 36~최고층 | 12 | 112,741,102 | 443,258,898 | - | 556,000,000 | 10,000,000 | 4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166,800,000 |
| 84B | 101동 2호 103동 2호 103동 5호 104동 5호 | 2~5층 | 14 | 103,819,145 | 408,180,855 | - | 512,000,000 | 10,000,000 | 4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153,600,000 |
| | | 6~10층 | 20 | 105,238,547 | 413,761,453 | - | 519,000,000 | 10,000,000 | 4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155,700,000 |
| | | 11~15층 | 20 | 106,657,949 | 419,342,051 | - | 526,000,000 | 10,000,000 | 4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157,800,000 |
| | | 16~20층 | 16 | 107,671,808 | 423,328,192 | - | 531,000,000 | 10,000,000 | 4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159,300,000 |
| | | 21~25층 | 20 | 108,685,667 | 427,314,333 | - | 536,000,000 | 10,000,000 | 4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160,800,000 |

| | | | | | | | | | | | | | | | | |
|------------------------------------------|--------|-------------|-------------|-------------|-------------|-------------|------------|------------|------------|------------|------------|------------|------------|------------|-------------|-------------|
| 101동 5호 102동 2호 102동 5호 104동 2호 | 26~30층 | 20 | 109,699,526 | 431,300,474 | - | 541,000,000 | 10,000,000 | 4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162,300,000 |
| | 31~35층 | 20 | 110,713,385 | 435,286,615 | - | 546,000,000 | 10,000,000 | 4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54,600,000 | 163,800,000 |
| | 36~최고층 | 12 | 111,727,244 | 439,272,756 | - | 551,000,000 | 10,000,000 | 4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55,100,000 | 165,300,000 |
| | 3~5층 | 10 | 101,791,427 | 400,208,573 | - | 502,000,000 | 10,000,000 | 4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150,600,000 |
| | 6~10층 | 20 | 103,210,829 | 405,789,171 | - | 509,000,000 | 10,000,000 | 4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152,700,000 |
| | 11~15층 | 20 | 104,630,232 | 411,369,768 | - | 516,000,000 | 10,000,000 | 4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154,800,000 |
| | 16~20층 | 16 | 105,644,091 | 415,355,909 | - | 521,000,000 | 10,000,000 | 4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156,300,000 |
| | 21~25층 | 20 | 106,657,949 | 419,342,051 | - | 526,000,000 | 10,000,000 | 4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157,800,000 |
| | 26~30층 | 20 | 107,671,808 | 423,328,192 | - | 531,000,000 | 10,000,000 | 4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159,300,000 |
| 31~35층 | 20 | 108,685,667 | 427,314,333 | - | 536,000,000 | 10,000,000 | 4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160,800,000 | |
| 36~최고층 | 12 | 109,699,526 | 431,300,474 | - | 541,000,000 | 10,000,000 | 4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162,300,000 | |
| 96 | 3~5층 | 6 | 123,871,860 | 443,752,855 | 44,375,285 | 612,000,000 | 10,000,000 | 5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183,600,000 |
| | 6~10층 | 10 | 124,681,480 | 446,653,200 | 44,665,320 | 616,000,000 | 10,000,000 | 5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184,800,000 |
| | 11~15층 | 10 | 126,098,315 | 451,728,805 | 45,172,880 | 623,000,000 | 10,000,000 | 5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186,900,000 |
| | 16~20층 | 8 | 127,312,745 | 456,079,323 | 45,607,932 | 629,000,000 | 10,000,000 | 52,900,000 | 62,900,000 | 62,900,000 | 62,900,000 | 62,900,000 | 62,900,000 | 62,900,000 | 62,900,000 | 188,700,000 |
| | 21~25층 | 10 | 128,527,175 | 460,429,841 | 46,042,984 | 635,000,000 | 10,000,000 | 53,500,000 | 63,500,000 | 63,500,000 | 63,500,000 | 63,500,000 | 63,500,000 | 63,500,000 | 63,500,000 | 190,500,000 |
| | 26~30층 | 10 | 129,741,605 | 464,780,359 | 46,478,036 | 641,000,000 | 10,000,000 | 5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192,300,000 |
| | 31~35층 | 10 | 130,956,035 | 469,130,877 | 46,913,088 | 647,000,000 | 10,000,000 | 54,700,000 | 64,700,000 | 64,700,000 | 64,700,000 | 64,700,000 | 64,700,000 | 64,700,000 | 64,700,000 | 194,100,000 |
| | 36~차상층 | 2 | 132,170,465 | 473,481,395 | 47,348,140 | 653,000,000 | 10,000,000 | 5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195,900,000 |
| | 최상층 | 2 | 132,474,072 | 474,569,025 | 47,456,903 | 654,500,000 | 10,000,000 | 55,450,000 | 65,450,000 | 65,450,000 | 65,450,000 | 65,450,000 | 65,450,000 | 65,450,000 | 65,450,000 | 196,350,000 |
| 115 | 2~5층 | 20 | 143,707,550 | 514,811,318 | 51,481,132 | 710,000,000 | 10,000,000 | 6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213,000,000 |
| | 6~10층 | 30 | 145,124,385 | 519,886,923 | 51,988,692 | 717,000,000 | 10,000,000 | 6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215,100,000 |
| | 11~15층 | 30 | 146,743,625 | 525,687,614 | 52,568,761 | 725,000,000 | 10,000,000 | 62,500,000 | 72,500,000 | 72,500,000 | 72,500,000 | 72,500,000 | 72,500,000 | 72,500,000 | 72,500,000 | 217,500,000 |
| | 16~20층 | 24 | 147,958,055 | 530,038,132 | 53,003,813 | 731,000,000 | 10,000,000 | 6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219,500,000 |
| | 21~25층 | 30 | 149,172,485 | 534,388,650 | 53,438,865 | 737,000,000 | 10,000,000 | 6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221,100,000 |
| | 26~30층 | 30 | 150,386,915 | 538,739,168 | 53,873,917 | 743,000,000 | 10,000,000 | 64,300,000 | 74,300,000 | 74,300,000 | 74,300,000 | 74,300,000 | 74,300,000 | 74,300,000 | 74,300,000 | 222,900,000 |
| | 31~35층 | 30 | 151,601,345 | 543,089,686 | 54,308,969 | 749,000,000 | 10,000,000 | 64,900,000 | 74,900,000 | 74,900,000 | 74,900,000 | 74,900,000 | 74,900,000 | 74,900,000 | 74,900,000 | 224,700,000 |
| | 36~차상층 | 14 | 152,815,775 | 547,440,205 | 54,744,020 | 755,000,000 | 10,000,000 | 6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226,500,000 |
| | 최상층 | 6 | 153,018,180 | 548,165,291 | 54,816,529 | 756,000,000 | 10,000,000 | 6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226,800,000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등로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 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 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에 따른 주택 신용 보증 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 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공급금액(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V 특별공급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기준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처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 | | | | | | | | | | | | | | | |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주 요건</p> |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13 1228 2072 1396">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5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상남도청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부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기업정책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4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 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 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따릅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거주자) ■ ②배점 | | | | |
|------------------------------------------------------------------------------------------------------------------------------------------------------------------------------------------------------------------------------------------------------------------------------------------------------------------------------------------------------------------------------------------------------------------------------------------------------|-------------------------------------------------------------------------------------------------------------------------------------------------------------------------------------------------------------------------------------------|----------------|-------|---------------------------------------------------------------------------------------------------------------------------------------------------------------------------------------------------------------------------------------------------------------------------------------|--------------------------------------------|
|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 계 | 100 |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3명 | 35 | |
| | | | 2명 | 25 |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2명 | 10 |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경상남도)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 | | |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00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 | <p>※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p> <p>■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17호(2024.03.25.)]에 따릅니다.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당첨자 선정방법</p> |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data-bbox="309 574 2128 1037">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p> <p>■ ②순위</p> <table border="1" data-bbox="309 1189 2128 1340">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p>■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거주자)</p>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순위 | 내용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05.31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9,806,313원 | 8,248,468원~ 11,547,854원 | 8,775,072원~ 12,285,099원 | 9,563,283원~ 13,388,595원 | 10,351,494원~ 14,492,090원 | 11,139,705원~ 15,595,586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11,207,214원 | 9,898,161원~ 13,197,547원 | 10,530,086원~ 14,040,114원 | 11,475,939원~ 15,301,251원 | 12,421,793원~ 16,562,389원 | 13,367,64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p>※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p> <p>※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p> <p>※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따릅니다.</p> <p>■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p>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거주자)</p> <p>■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304 667 2085 1276">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 colspan="2">가점구분</th> <th>점수</th> <th colspan="2">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 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 colspan="2">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 colspan="2">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 colspan="2">1년 미만</td> <td>2</td> <td colspan="2">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 colspan="2">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 colspan="2">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 colspan="2">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 colspan="2">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 colspan="2">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 colspan="2">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 colspan="2">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 colspan="2">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 colspan="2">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 colspan="2">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 colspan="2">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 colspan="2">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 colspan="2">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 colspan="2"></td> <td></td> </tr> <tr> <td rowspan="4">② 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 colspan="2">0명</td> <td>5</td> <td colspan="2">4명</td> <td>25</td> </tr> <tr> <td colspan="2">1명</td> <td>10</td> <td colspan="2">5명</td> <td>30</td> </tr> <tr> <td colspan="2">2명</td> <td>15</td> <td colspan="2">6명 이상</td> <td>35</td> </tr> <tr> <td colspan="2">3명</td> <td>20</td> <td colspan="2"></td> <td></td> </tr> <tr> <td rowspan="8">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8">17</td> <td colspan="2">6개월 미만</td> <td>1</td> <td colspan="2">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 colspan="2">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 colspan="2">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 colspan="2">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 colspan="2">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 colspan="2">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 colspan="2">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 colspan="2">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 colspan="2">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 colspan="2">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 colspan="2">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 colspan="2">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 colspan="2">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 colspan="2">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 colspan="2">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 colspan="2">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 colspan="2"></td> <td></td> </tr> </tbody> </table> <p>※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p>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 점수 | 가점구분 | | 점수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18 | 1년 미만 |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22 | 2년 이상 ~ 3년 미만 |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24 | 3년 이상 ~ 4년 미만 |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26 | 4년 이상 ~ 5년 미만 |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28 | 5년 이상 ~ 6년 미만 |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30 | 6년 이상 ~ 7년 미만 | | 14 | 15년 이상 | | 32 | 7년 이상 ~ 8년 미만 | | 16 |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 5 | 4명 | | 25 | 1명 | | 10 | 5명 | | 30 | 2명 | | 15 | 6명 이상 | | 35 | 3명 | | 20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 8 | 15년 이상 |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 9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 점수 | 가점구분 |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 14 | 15년 이상 |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 5 | 4명 |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명 | | 10 | 5명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명 | | 15 | 6명 이상 |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명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 8 | 15년 이상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p>■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16호(2024.03.25.)]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천제에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본 주택에 청약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09 992 2132 1388"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거주자)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인 가구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1인 가구 | | | | | | | | | | | | | | | | | | |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2024.05.31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105,863원~ 11,207,214원 | 10,723,008원~ 13,197,547원 | 11,407,593원~ 14,040,114원 | 12,432,268원~ 15,301,251원 | 13,456,942원~ 16,562,389원 | 14,481,61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17,823,52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4원 11,207,215원~ | ~13,197,547원 13,197,548원~ | ~14,040,114원 14,040,115원~ | ~15,301,251원 15,301,252원~ | ~16,562,389원 16,562,390원~ 17,823,526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비고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 | | | | | | | | | | | |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
| 전용면적 85㎡ 초과 | - | 10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항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합니다.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

| | | |
|------------------|-----------------------------------|-------------------------------------------------------------------------------------------------------------------------------------------------------------------------------------------------------------------------------------------------------------------------------------------------------------------------------------------------------------------------------------------------------------------------------------------------------------------------------------------------------------------------------------------------------------------------------------------------------------------------------------------------------------------------------------------------------------------------------------------------------------------------------------------------------------------------------------------------------------------------------------------------------------------------------------------------------------------------------------------------------------------------------------------------------------------------------------------------------------------------------------------------------------------------------------------------------------------------------------------------------------------------------------------------------|
| | | <p>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
| |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p> |
| | | <p>■ ②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p>비고</p> | |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p>■ 청약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 필요서류 | |
|-----------------------------------------|-------------------------------------------------------------------------------------------------------------------------------------------------------------------------------------------------------------------------------------------------------------------------------------------------------------------------------------------------------------------------------------------------|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p>(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 <p>당첨자발표 서비스</p> | <p>청약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6.18.(화요일) ~ 2024.06.27.(목요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p>문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06.18.(화요일)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접수 기간 : 2024년 06월19일~2024년 06월30일까지 12일간]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 | ○ | |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 초본 (상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 신분증, 인감도장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 국인등록증)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 신청자와의 관계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신청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입증받기 위한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입양의 경우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 주민등록표 초본 (상세)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
| | ○ | | 자격요건 확인서 |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불가))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입양의 경우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 | | | |
|----------------|---------|-----------------------|--------------------------------------------------------------------------------------------------------------------------------------------------------------|----------------------------------------------------------------------------------------------------------------------------------------------------------------------------------------------------------------------------------------------------------------------------------------------------------------------------|
| | | |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혼인 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
| | ○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불가))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입양의 경우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소득증빙서류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소득세 입증서류 |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u>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u> 참조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주민등록초본 (상세) |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일반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만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
|----------------------------|-----------|---------------------------------------------------------------------------------------------------------------------------------------------------------------------------------------------------------------------------------------|--------------|---------------------------------------------------------------------------------------------------------------------------------------------------------------------------------------------------------------------------------------------|
| (가점제)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에 한함), '상세'로 발급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 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 | ○ | 출입국 사실증명서 |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 당첨사실 확인서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3년간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시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 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시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 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대리인 제출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청약자 본인 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3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1통 필요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②,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
|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재직증명서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①,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②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① 세무서,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①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① 견본주택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증빙 제출서류**

| 구 분 | 증빙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재산세 납부현황(부동산 소유자) ③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①,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
| | 추가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위택스 (www.wetax.go.kr) |
| | 추가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①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통합발급,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 ※ 위택스 비회원 로그인 출력 가능 |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 보유 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 ※ 아래 제출하는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청약신청자 본인)**

| 구 분 | 해당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① 해당직장 / 세무서 / 견본주택 ② 세무서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소득금액증명 | ①,② 세무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비사업자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중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Ⅷ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4.06.18.(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계약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07.01.(월)~2024.07.04.(목)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너스 웰가 진주 건분주택 (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06-2) |
| 일반공급 | 1순위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분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건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 당첨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추첨제 당첨자 제외)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어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건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건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평형에 따라 공급금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실거래신고 및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임)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또는 계약자)의 당첨(또는 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남은 세대에 대한 무순위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단, 미분양 계약시 부적격 당첨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점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지정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타금융기관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미적용)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대출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적격 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 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당월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당월 사업주체의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단, 당월 대출 실행일 전 입주지정일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병”이 납부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는 “을”이 부담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사항 (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 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귀책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및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 납부계좌 | 국민은행 | 291637-04-011800 | 신영부동산신탁(주) |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103동702호 홍길동 → 1030702홍길동 |
| 중도금 / 잔금 |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 부여(가상계좌) | | |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국민은행, 291637-04-011800, 신영부동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잔금 제외)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집공고상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됨. 개인별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3동702호 홍길동 →10307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시행수탁자 및 시행위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 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아너스웰가' 홈페이지(<https://www.honorswellga.com>)에 공고합니다.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추첨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동으로 추첨되며, 정당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세대에 한해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IX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X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옵션**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 | | | | | | | | (단위 : 원) |
|--------------|----------|----------|------------|------------|------------|------------|------------|------------|----|----------|
| 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 | | | 잔금(30%) | 비고 | |
| | | 계약시 | 2024-11-29 | 2025-11-28 | 2026-08-31 | 2027-04-30 | 2027-07-30 | 2027-10-29 | | 입주지정일 |

| | | | | | | | | | | |
|-----|------------|-----------|-----------|-----------|-----------|-----------|-----------|-----------|-----------|--|
| 84A | 22,0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6,600,000 | |
| 84B | 19,500,000 | 1,950,000 | 1,950,000 | 1,950,000 | 1,950,000 | 1,950,000 | 1,950,000 | 1,950,000 | 5,850,000 | |
| 96 | 23,000,000 | 2,300,000 | 2,300,000 | 2,300,000 | 2,300,000 | 2,300,000 | 2,300,000 | 2,300,000 | 6,900,000 | |
| 115 | 23,000,000 | 2,300,000 | 2,300,000 | 2,300,000 | 2,300,000 | 2,300,000 | 2,300,000 | 2,300,000 | 6,900,000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 항 목 |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 계약금 | 국민은행 | 291637-04-011769 | 신영부동산신탁(주) |
| | 중도금 | |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 부여(가상계좌) | 신영부동산신탁(주) |
| | 잔 금 | | | 신영부동산신탁(주) |

- 상기 공사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국민은행 291637-04-011769 신영부동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2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고,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자료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및 두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내 마감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전실에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목장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및 색상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커튼박스 깊이 축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약식표기 | 제조사 | 미선택 시 | 설치수량 | 선택 시 설치 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84A | LG전자 | 기본 선배관 | 4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5,802,000 | 580,200 | 5,221,800 | |
| 84B | | | 4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5,802,000 | 580,200 | 5,221,800 | |
| 96 | | | 5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7,126,000 | 712,600 | 6,413,400 | |
| 115 | | | 5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 | 7,126,000 | 712,600 | 6,413,400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시공 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전실에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등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2) 가전기기 옵션

(단위 : 원)

| 품목 | 미선택 시 | 선택 시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 제외 | 냉장고 : LG전자/BC1L2AA/386L/베이지,크림화이트 냉동고 : LG전자/BC1F2AA/324L/베이지,크림화이트 김치냉장고 :LG전자/BC1K2AAC/324L/베이지,크림화이트 | 전타입 (84A,84B,96,115) | 5,879,000 | 587,900 | 5,291,100 | |
| *키큰장 | 냉장고장 | 냉장고장+키큰빌트인장 | | 700,000 | 70,000 | 630,000 | |
| 인덕션 | 하이브리드 쿡탑 (가스1+하이러 이트2) | LG전자/BEI3GQBI/인덕션3구 | | 623,000 | 62,300 | 560,700 | |
| 식기세척기 | 제외 | LG전자/DIB22S/가구도어부착 | | 1,259,000 | 125,900 | 1,133,100 | |

3) 가구/마감재 옵션

| 품목 | 미선택 시 | 선택 시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 주방벽&상판 | E-STONE+ 벽타일+ 싱크볼 | 세라믹(벽체,상판)+사각싱크볼 | 84A | 4,543,000 | 454,300 | 4,088,700 | | |
| | | | 84B | 3,050,000 | 305,000 | 2,745,000 | | |
| | | | 96 | 3,595,000 | 359,500 | 3,235,500 | | |
| | | | 115 | 3,647,000 | 364,700 | 3,282,300 | | |
| 식탁후면 장식장 | 제외 | 추가(장식장)+상판(E-STONE) | 84A | 2,505,000 | 250,500 | 2,254,500 | | |
| | | 추가(장식장)+상판(세라믹) | | 2,660,000 | 266,000 | 2,394,000 | | |
| 주방아일랜드 일체형식탁 | 제외 | 추가(식탁)+세라믹 상판 | 96,115 | 1,726,000 | 172,600 | 1,553,400 | | |
| 포슬린타일 (바닥타일) | 강마루 | 바닥타일(복도/펜트리/거실/주방) | 84A | 3,919,000 | 391,900 | 3,527,100 | | |
| | | 바닥타일(복도/거실/주방) | 84B | 4,049,000 | 404,900 | 3,644,100 | | |
| | | 바닥타일(복도/펜트리/거실/주방) | 96 | 바닥타일(알파룸) | 817,000 | 81,700 | 735,300 | |
| | | | | 바닥타일(복도/펜트리/거실/주방) | 4,659,000 | 465,900 | 4,193,100 | |
| | | 바닥타일(침실4) | 115 | 1,038,000 | 103,800 | 934,200 | | |
| | | 알파룸 및 침실4 슬라이딩도어 | 경량벽체+ 목창호 | 슬라이딩 도어 | 96 | 3,452,000 | 345,200 | 3,106,800 |
| 115 | 3,608,000 | 360,800 | | | 3,247,200 | | | |
| 거실, 주방 디자인 조명 | 거실, 주방 LED 기본등 | 거실 라인조명 : LED 280W[(감성+디밍) / 색온도조절(3000K~6500K)] 주방 레일등 : *LED 10W / 3EA(2ST) | 84A | 2,440,000 | 244,000 | 2,196,000 | | |
| | | | 84B | 2,141,000 | 214,100 | 1,926,900 | | |
| | | | 96 | 2,115,000 | 211,500 | 1,903,500 | | |
| | | 거실 라인조명 : LED 280W[(감성+디밍) / 색온도조절(3000K~6500K)] | 115 | 2,608,000 | 260,800 | 2,347,200 | | |

| | | | | | | | |
|----------------------------------------|-----------------|---------------------------------------------------------------------------------------------------------------------------------------|-----|-----------|---------|-----------|--|
| 거실, 주방 디자인 조명 (알파룸 및 침실4 확장형) | | 주방 레일등 : *LED 10W / 3EA 거실 라인조명 : LED 400W[(감성+디밍) / 색온도조절(3000K~6500K) 주방 레일등 : LED 10W / 3EA (알파룸 라인조명 및 우물천정 연장) | 96 | 2,803,000 | 280,300 | 2,522,700 | |
| | | 거실 라인조명 : LED 560W[(감성+디밍) / 색온도조절(3000K~6500K) 주방 레일등 : LED 10W / 3EA (침실4 라인조명 및 우물천정 연장) | 115 | 3,530,000 | 353,000 | 3,177,000 | |
| 공용욕실 비데 | 안방 비데 | 추가(공용욕실 비데 적용) | 전타입 | 311,000 | 31,100 | 279,900 | |
| 드레스룸 스타일업 | 시스템 가구 | 벽판넬(시스템) | 96 | 4,880,000 | 488,000 | 4,392,000 | |
| | 일반가구도어 시스템가구 | 슬라이딩 도어+벽판넬(시스템) | 115 | 6,528,000 | 652,800 | 5,875,200 | |

■ 기타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및 실물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유상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입주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안내

- 추가선택품목 납부는 아래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및 유상옵션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유상옵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공급자와 적의 조정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시행수탁사인 신영부동산신착(주)는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보관 및 옵션계약 공급자 에스티에스개발(주)의 요청에 따른 출금 등 단순 관리만을 담당하며, 계약자는 공급자 에스티에

스개발(주)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행수탁사인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계좌 및 자금관리만 진행함.)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 된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 국민은행 | 291637-04-011743 | 신영부동산신탁(주) |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예시) 2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사항

1. 추가 선택품목계약의 공급자(매도인)는 에스티에스개발(주)이며 공급대금은 신영부동산신탁(주) 명의의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동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원은 공급대금 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영부동산신탁(주)은 "본 계약"의 공급대금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본 계약서상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보관 및 옵션계약 공급자 에스티에스개발(주)의 요청에 따른 출금 등 단순 관리만을 담당하며, 추가 선택품목계약 공급자 에스티에스개발(주)가 부담해야할 일체의 의무(추가 선택품목 설치·하자보수, 본 계약 해제/해지시 공급대금 반환의무, 기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본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공급자인 추가 선택품목계약 공급자 에스티에스개발(주)에게 있습니다.

지 안내 및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도로 및 기반시설]

- 본 시설은 인근에 남해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또한, 본 시설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확장공사 전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서측 진마대로(폭 : 20m~25m) 와 남동측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하며, 북측의 주출입구 진입도로(폭 : 20m), 북동측 막다른 도로(폭 : 20m)가 설치되며 ,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 시 혼잡 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 인접대지경계선 외부 완충녹지, 산책로 및 통학로는 당 단지 소유가 아닙니다.
- 당 단지외 완충녹지 밖(도시개발 경계) 높이 약 18m의 방음벽이 설치 예정입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인접한 완충녹지의 산책로 및 통학로를 통해 외부인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 등 개발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인허가 관련사항]

- 당 단지는 2022년 10월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2022년 12월 완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 분양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최종 측량 결과 및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 여건에 따른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 내 타토지의 용도,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감재]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목록표 참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합니다.
-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닙니다.

[분양 홍보물] (견본주택 및 모형, 카탈로그, 각종광고지)

-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합니다.
-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된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입면디자인 (저층부 석재 및 도장디자인 등), 줄눈, 조경, 색채, 몰딩, 창호, 옥상장식물, BI 위치와 크기 및 개소, 필로티, 외부계단, 단지내 옹벽 등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커뮤니티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및 주요사항

[공통사항]

- 각 동별 특성에 따른 인접세대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놀이터), 조경디자인(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외부 저층부 및 근린생활시설의 등의 외부입면은 석재마감 및 석재뿔칠 혼합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얼굴인식 로비폰 내 원패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원패스시스템은 입주자 스마트폰 내 블루투스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공청/위성안테나, 이동통신[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무선통신보조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옥상부에는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고,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세대(96type-거실, 및 알파룸 , 115type-거실,침실3,침실4) 창호에는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되며, 구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커튼박스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각동 옥상층 및 지하2층 EPS/TPS)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옥상 층 101동_115TY 중계기설치 및 동/서 방향 옥외 안테나설치 / 102동_115TY(동방향) 중계기설치 및 동북/동남 방향 옥외 안테나설치 / 103동)_84ATY(서방향) 중계기 설치 및 서/북 방향 옥외 안테나설치 / 104동)_96TY 중계기 설치 및 동/서 방향 옥외 안테나설치 될 예정이며, 옥상 층 4개동(101동/ 102동/ 103동/ 104동) 및 지하2층 EPS/TPS(101동/ 102동/ 103동/ 104동)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외 지하1~4층 옥내 서비스 안테나를 설치하여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특히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사면처리,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미관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남서측, 남동측 방향은 완충녹지 밖(도시개발경계) 약 18m 방음벽으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준공 후 하자기간까지는 무상 A/S기간이며, 하자기간이후 부터는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상 A/S기간내 고객의 부주의로 제품이 손상될 경우 별도의 수리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고, 일부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보관함은 각 동 지하1층 또는 지상1층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 지하1층 또는 지상1층에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주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지하1층에 4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와 규모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합니다.
- 102동, 103동, 104동 인근 하부 지하1층에는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소화가스실/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 본공사 시 그 위치와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 MMI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57(g)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기타시설(보안등 및 볼라드, CCTV(풀대포함) 등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화재로 인한 대피기구인 공기안전매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11개소 예정되어 있어 설치 구간에 식재 제한(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이 있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

- 일부 필로티 진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필로티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부에 휴게공간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출입구]

- 단지내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비상차량 출입구 2개소가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방문(외부)차량 통제를 위해 주차차단기가 설치될 계획이며, 주차차단기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동]

- 101동 서측, 102동 동측의 잔디마당, 광장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서측, 104동 동측의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옥상광장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북측의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옥상광장, 잔디마당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1층 제연헬륨이 계획되어 추후 실시공시 헬륨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4층까지 4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동마다 접하는 주차면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지하1층~지하2층)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94대(급속8대/완속86대)이며, 아파트(급속6대/완속79대) 및 근생(급속2대/완속7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의 주행로 유효높이는 택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그 높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설치되는 비상벨시스템, CCTV, 무선통신 안테나 및 케이블,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및 옥내 서비스 안테나 및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1층 101~102동 주변은 근린생활시설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대수 확보 및 이용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1층 101~102동은 근생 이용객과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주차대수 확보 및 이용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은 사업주체와의 계약에 의해 (주)에스엘플랫폼이 위탁운영하며, 운영비용 및 방안 등에 대해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입주자가 일정금액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 후 입주자의 서비스 선호도에 따라 변경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이용으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101동, 102동, 104동부위 근린생활시설 2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그로인해 저층세대 및 보행시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는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위치는 본 공사시 기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상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지상1층에 맘스테이션,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지상1층에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지상1층에 관리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과 104동 사이 지상2층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코인세탁실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입구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맘스테이션이 설치됨.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에 신발장과 주방가구가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 등)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고,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입주관리 및 A/S 업무를 위해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요사항

[공통사항]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고는 기준층 H:2,350, 최상층 H: 2,400으로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 등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시행위탁자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장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 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두께 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향식 피난사다리]

- 84A, 84B, 96, 115타입은 피난용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됩니다.
-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3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제공품목]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추가 선택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 거실 아트월의 경우 해당위치에 대형타일(600*1200)이 시공되며 주택형별 타일의 색상, 컬러, 종류 및 나누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구공사]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공사]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확장시 제공되는 이중 창호의 프레임은 외부창호의 외측면에 컬러창호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외부창호는 동별 층별(101동,102동,104동 3~17층, 103동 2~16층)에 따라 각세대 일부 창호설치부위에 소방관 진입창(유리난간포함)을 설치할 예정이며, 상부층과의 입면상 차이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비확장 세대는 외부 단창 및 내부 분합 단창이 설치됩니다.
- 거실 창호의 경우 추후 창호 프레임 처짐 방지를 위해 하부 지지 프레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으며, 루버외부에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 되고, 창호 디자인 및 창호사양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실 시공시 욕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전실에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세대는 제외됩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합단자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5,700K로 적용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을 적용, 추가적인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안방 및 거실의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3000k~6500k로 적용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을 적용, 추가적인 색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에어컨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되며,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 시공됩니다.
- 세대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보일러 등은 발코니 내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손빨래수전은 마감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마감 커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전기,통신),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 형태, 천장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발코니 및 실외기실]

-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장,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장이 천장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장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추후 상품구성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의 설치위치가 상이합니다.
- 유상옵션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천장물딩 및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주방가전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시 수납의 효율을 높여주는 키큰빌트인장(수납특화장)이 함께 제공되며, 키큰빌트인장(수납특화장)은 단독옵션 선택이 가능 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시 설치됩니다.
- 인덕션 옵션 미선택시 하이브리드 가스쿡탑(가스1구+하이라이트2구)가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가구도어부착)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바닥(거실,주방)타일 옵션 선택시 포슬린 타일이 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전실 강마루입니다.
- 84A, 84B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4실(거실+침실1+침실2+침실3)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4실 기본 선배관이 설치됩니다.
- 96, 115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5실(96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15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5실 기본 선배관이 설치됩니다.
- 84A타입 주방옵션 선택시 주방세라믹(상판, 벽체)+사각싱크볼+식탁후면장이 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E-STONE상판+벽타일+싱크볼+도배마감입니다.
- 84B타입 주방옵션 선택시 주방세라믹(상판, 벽체)+사각싱크볼이 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E-STONE상판+벽타일+싱크볼+주방아일랜드 일체형식탁 마감입니다.
- 96, 115타입 주방옵션 선택시 주방세라믹(상판, 벽체)+사각싱크볼+주방아일랜드 일체형식탁이 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E-STONE상판+벽타일+싱크볼+기본아일랜드 마감입니다.
- 96 알파룸, 115 침실4 옵션 선택시 슬라이딩도어(1안), 슬라이딩도어+바닥타일(2안)이 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경량벽체+목창호+강마루로 시공예정입니다.

■ 설계 외 공통사항

- 공동주택 외부에 표현된 방음벽, 완충녹지는 당현장 소유가 아니며, 위치, 규모, 디자인등은 시공 여건 또는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공공시설용지 등)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승인변경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관련법규(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 개인정보 요구 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는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공원, 공공시설용지 등 개설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공급대상의 약식표기는 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에는 반드시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북동측에 위치한 진주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등), 소음, 진동, 악취 및 대형차량 통행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심지와 인접하여 기상여건(풍향, 풍속, 기온역전 등)에 따라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계약 전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외부에 기타용지(기반시설용지, 공원, 완충녹지, 일반상업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상가용지)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위탁자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사업주체는 일절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①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② 면적을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사용시설(단지 내 커뮤니티, 운동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브랜드는 시공사의 브랜드관리 정책에 따라 향후 일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28년 6월(예정) 입주 이후에도 기타용지(기반시설용지, 공원, 완충녹지, 일반상업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상가용지) 공사로 인한 소음,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의 부도, 파산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시 이삿짐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 후 엘리베이터로 운반하여야 하며, 고가사다리 차량 등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을 위한 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21.01.25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2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조경특화시설(수변공간),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맘스테이션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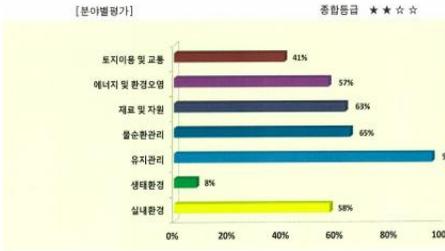
•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는 예비 인증으로서 공사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비 인증서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 | |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진주 에코저택저택리모델 | 인증번호 | G-SEED-2023-1135-7 |
| 건축주 | 에스티에스개발㈜ |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 준공(예정)일 | 2027년 9월 1일 | 유효기간 | 2023.10.19 ~ 사용승인일 |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 | [인증 등급] | 인증등급 우량등급(복합건축물(공동주택·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기준 |
| 층 수 | 지하 4층, 지상 39층 / 640세대 | | |
| 면적 | 207,271.4364㎡ | 인증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합시설 | 인증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
| 설계자 | 에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진주 에코저택저택리모델 도시개발구역 복합합성 건축공사
2. 신청자: 에스티에스개발㈜
3.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
4. 성능등급

| 가. 소용 관련 등급 | | 다. 환경 관련 등급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1. 광충족률 저단성능 | ★★★ | 20. 단열재 녹지율 조성 | 해당없음 |
| 2. 음향충족률 저단성능 | ★ | 21. 자연지형 녹지율 | ★ |
| 3. 세대 간 공적벽의 자음성능 | ★★★★ | 22. 생태면적률 | ★ |
| 4. 교통충족률도,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23. 녹지율 조성 | 해당없음 |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24.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감을 저감의 적용 | ★★ |
| 나. 구조 관련 등급 |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해당없음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26. 단열체내 환기성능 확보 | ★★★★ |
| 1. 내구성 | ★ | 27. 자동차노출물질 설치 수준 | ★★ |
| 2. 가연성 | ★★★★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 |
| 3. 수리용이성 적용부분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4. 수리용이성 적용부분 | ★ | 1. 단지내,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3. 자연기후자원 및 자연기후로의 적합성 | ★★ |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해당없음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해당없음 | 5. 친환경성의 환경관리 계획 | ★★★ |
| 3. 투광사 절감도량 최소화 | ★★★★ | 6. 온·유지관리 유지 및 매뉴얼 제공 | ★★★★ |
| 4. 침투성 건설방지 대책의 타당성 | 해당없음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5. 에너지 성능 |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설치 | ★ | 9. 단열체내의 사용연역 약자해제 | ★★ |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해당없음 | 10. 공동공간 사용의 약자해제 | ★★ |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해당없음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9. 소음을 저감할 위한 특장설비의 사용 유무 | ★★ | 12. 세대 내 별도 주차장 | ★ |
| 10. 환경성적인 자원(EPC)의 사용 | ★★★★ | 13.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 | ★★ |
| 11. 차탄소 자체의 사용 | ★★★★ | 14. 탈탄소형 주택 | ★★ |
| 12. 자원순환 자체의 사용 | ★★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 |
| 13. 유해물질 저감 자체의 사용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14. 녹색건축인증 적용 비율 | 해당없음 | 1. 감지 및 진보설비 | ★ |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 2. 재질설비 | ★ |
| 16. 물관리 | ★★ | 3. 내화성능 | ★ |
| 17. 보행 및 유동지킴이 이용 | ★★ | 4. 수평피난거리 | ★ |
| 18. 흡수정기기 사용 | ★★ | 5. 배도 및 계단 유호도비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6. 피난설비 | ★★ |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 48 호 서식) 개정 2017.12.30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진주 에코저택저택리모델 도시개발구역 복합합성 건축공사 | 인증번호 | 23-주-제-1-0171 |
| 인증번호 | 2027001 | 평가자 | 인증원 |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94 |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 층 수 | 지하 4층, 지상 39층 (사하형) | 인증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
| 면적 | 207,271.4364㎡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금지 종료일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 인증등급 | 인증등급 |
| 설계자 | 에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인증등급 | 1등급 |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공급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년) |
|----|------------------------|------------------------|------------------------------------|------------------------|
| 냉방 | 0.0 | 0.0 | 0.0 | 0.0 |
| 난방 | 35.7 | 68.1 | 50.9 | 13.7 |
| 급탕 | 30.7 | 34.0 | 25.2 | 6.9 |
| 전력 | 6.7 | 6.2 | 17.2 | 2.9 |
| 합계 | 73.1 | 110.1 | 103.9 | 19.8 |
| 합계 | 73.1 | 110.1 | 103.9 | 23.3 |

■ 인증목적: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인증목적: 에너지소요량 인증을 위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공기시스템에서 오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냉방, 급탕, 급탕, 조명, 공기시스템에서 오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비(가) [] 설치로 [V] (냉차외) 인증 건축물입니다.
※ 제1인증등급 인증 건축물은 환경 부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구분 | 내진등급 I | 내진능력(MMI 등급) |
|----|--------|--------------|
| | | VII-0.257g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구분 | 회사명 | 감리금액(부가세 포함) | 비고 |
|--------|---------------|----------------|----|
| 건축감리 | (주)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 5,975,084,500원 | |
| 전기감리 |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 919,861,000원 | |
| 정보통신감리 | 이수기술단(주) | 277,200,000원 | |
| 소방감리 | (주)선한이엔지 | 1,364,390,573원 | |

■ 관리형태지식탁

-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에스티에스개발(주)과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흥한주택종합건설(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분양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수탁자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5.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과 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전 발생하자포함)은 시공자인 흥한주택종합공사(주)가 부담합니다.
 6. 분양대금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수탁자와 무관한 분양계약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한도초과 등)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사업시행과 관련한 필수적인 계약에 관한 승계계약체결, 자금관리 등 법률상 사업시행자로서 해야하는 형식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분양계약자들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임의로 분양계약자와 체결한 각종 합의서, 약정서 등은 수탁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서번호 | 보증금액(원) | 보증기간 |
|-------------------------|------------------|-----------------------------------------------------------------------|
| 제 01222024-101-0000900호 | 349,141,10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등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아너스 웰가 진주"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함.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분양자 (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 (매수인) 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신영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190099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 형태 : 분양대금 완납 시 개별 등기
- 2022년 12월 2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완료(2022-주택경관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시행위탁자 | 시행수탁자(사업주체) | 시 공 사 |
|--------|----------------|----------------|----------------|
| 상 호 | 에스티에스개발주식회사 | 신영부동산신탁(주) | 흥한주택종합건설(주) |
| 법인등록번호 | 131111-0126944 | 110111-7126835 | 161511-0006770 |

■ 견본주택 안내 및 유의사항

| 견본주택 약도 | 분양 안내 |
|------------------------------------------------------------------------------------------------------------------------------------------------------|----------------------------------------------------------------------------------------------------------------------------------------------------------------------------------------------------------------------------------------------------------------------------------------------------------------------------------------------------------------------------------------------------------------------------------------------------------------------------------------------|
|  <p>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 모델하우스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06-2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06-2 ■ 사 업 지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 ■ 홈페이지 : www.honorswellga.com ■ 분양문의 : 055-757-1004 <p>※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p> <p>※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p> |